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2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허용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하 “동물원등”이라 함),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 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장, 동물원등의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여전히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하여,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등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허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라면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제17조(개설) ① ----- ----- -----. <u>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동물병원의</u>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동물병원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원과 수족관</u> -----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해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고,¹⁾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해서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²⁾ 따라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원칙적으로 동물진료업도, 처방전 발급도 할 수 없음.³⁾

다만,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시설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조차 발급할 수 없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던바,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⁴⁾

-
- 1)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2)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3) 현행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의사 처방제 도입은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이 오·남용되어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13년 8월에 도입('12년 2월 「수의사법」 개정·공포)되었으며,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12년 2월에 기 개정·시행되었음.
 - 4)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동물원·수족관 동물 진료 및 처방 관련 현황 】

구 분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종사 수의사)	근거 법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급	○	○	수의사법 제12조제5항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투여	×	○	수의사법 제17조제1항
인체용 전문의약품 취급	×	○	약사법 제50조제2항
마약류 취급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자목
침습적 진료 (주사, 수술 등)	×	○	수의사법 제17조제1항
진단장비 사용	×	○	수의사법 제17조제1항, 제17조의3, 제17조의4

이에 개정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게 동물 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의 동물에 대한 진료를 허용 하여, 사육 중인 동물의 응급사태에 대한 수의사의 대처 수단을 마련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타 조문과의 관계 및 「약사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동물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신고제⁵⁾와 등록제⁶⁾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동물병원 개설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의 개설 없이 동물을 진료할 수 있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개정이 없는 경우 진료에 요구되는 이들 장치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둘째, 수의사가 진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관리 등을 규율하는 타 부처 소관 법률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현재 「약사법」 제50조⁷⁾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국개설자의 전문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법」 제

5) 「수의사법」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6) 「수의사법」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조⁸⁾는 의료기기취급자로 동물병원 개설자를 포함하고 있음.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이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⁹⁾할 때,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법률체계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 외에 「약사법」(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등 타부처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지자체·사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경우 현재 동물에게 급성 질병·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부의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촉탁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도 동물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상황임.

8)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9) 국내에 시판 중인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소·돼지·닭 등 가축에 사용하기 위한약품.

【 현행 동물원·수족관 동물 진료 및 처방 현황 】

운영주체	동물병원 운영 여부 및 수의사 고용 형태
국가 또는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병원 개설 → 공무원(수의직)이 진료 * 서울대공원동물원, 광주우치공원동물원, 청주랜드동물원, 전주동물원, 대전 오월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 개설 → 소속 수의사 직원이 진료 * 국립생태원, 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시설공단) ○ 외부 촉탁 수의사가 진료(동물병원 미개설) * 울산대공원동물원(울산시설공단) 등
민 간	○ 동물진료법인 개설 → 소속 수의사 직원이 진료 * 에버랜드(삼성물산) ○ 외부 촉탁 수의사가 진료(동물병원 미개설) * 아쿠아플라넷(한화)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만하여 동물진료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가 투명성·신뢰성 및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현재 대부분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별도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동물병원 개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